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7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의 출연금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도록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0월 16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4월 17일에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영등포구 장학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폐지 조례안은 2015.4.17.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운용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 “영등포구 장학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2009.10.1. 영등포구 관내 학생 중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영등포구 장학기금이 설치되어 운용·관리 되어왔으나,
-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교육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2014. 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5.4.17.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 되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장학기금을 폐지하는 것임.
- 참고로, 2015년도 장학기금은 3억 3,992만 1천원이 조성되어 3억 2,5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 1,447만 1천원은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될 예정임.